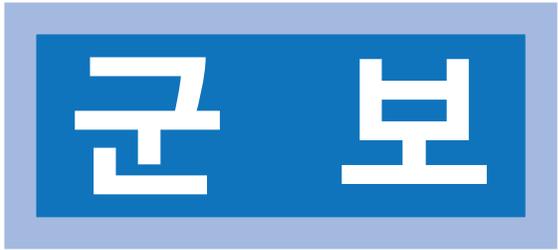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28호 2024. 3. 4.(월)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736호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737호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장수군 조례 제2738호	장수군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장수군 조례 제2739호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13
장수군 조례 제2740호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8
장수군 조례 제2741호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장수군 조례 제2742호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7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4-161호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5
-------------------	-------------------------------	----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4-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51
장수군 고시 제2024-9호	송천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52
장수군 고시 제2024-1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고시취소(울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3
장수군 고시 제2024-1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고시 취소(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4
장수군 고시 제2024-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55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4-180호	장수군 공인 등록(신조 및 폐기) 공고	56
장수군 공고 제2024-211호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58

회 람								
--------	--	--	--	--	--	--	--	--

장수군 조례 제2736호

###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수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

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옥외방송앰프와 옥내 유무선 송·수신장치, 원격방송장치 등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 ① 군수는 웹사이트 운영시 이

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전달과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전문)
- 목적 (안 제1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안 제5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안 제8조)
- 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 (안 제12조)

장수군 조례 제2737호

##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주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장수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p> <p>1. 제8조의2중 <u>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2. 3. (생략)</p> <p>4. 제18조제1항 단서중 “<u>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u>”은 “<u>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 1</u>”로 본다.</p> <p>5. ~ 8. (생략)</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 -----.</p> <p>&lt;삭 제&gt;</p> <p>2. 3. (현행과 같음)</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u>”는 “<u>「장수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u>”로 본다.</p> <p>5. ~ 8.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허위출장 관행 근절을 위하여 여비 정산 시 증거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의 결제와 정산 증빙서류 제출의 근거 명확화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장수군 여비 조례」 제4조제1호 삭제
- 관련 조례 명칭 정비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 1”을 “「장수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수정 반영

장수군 조례 제2738호

##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월 200,000원이하”를 “월 300,000원이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 <u>00,000원이하</u>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수당) ① ----- ----- 월 30 <u>0,000원이하</u> ----- -----. ②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법률 자문과 소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여 양질의 자문 및 소송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실화 (안 제6조제1항)
  - (현행)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
  - (개정)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

장수군 조례 제2739호

##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
-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추진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장수군 조례 제2740호

##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  
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장수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장수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계획의 수립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장수군 조례 제2741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대상포진의 감면대상자란 중 “60세”를 “50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증명 수수료(제8조 관련)

구 분	민 원 명	기준	수 수 료			비 고
			진료 수가	수입 증지	계	
일반진단	일반건강진단서	1통		1,000		
	근로자건강진단서	“		1,000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	“		3,000		
	일반진단서	“		1,000		
	운전면허적성검사	“		1,000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및 일반)	“		1,000		
	총포등소지허가신청자신체검사서	“		1,000		
	건설기계신체검사서	“		1,000		
특별진단서	병사용진단서	“		2,000		
	상해진단서 3주이내	“		2,000		
	상해진단서 3주이상	“		2,000		
	사체검안서	“		5,000		
	흉부결핵검진 확인서	“		1,000		
사실확인적 증명	사망진단서	“		1,000		
	출산·사산·사태증명서	“		1,000		
	기발급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	“		1,000		
예방접종	유료접종	1회분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내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제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명칭</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수수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진료 추가</th> <th>수입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일반진단</td> <td>일반건강진단서</td> <td>1종</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근로자건강진단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취중분야용사자간건강진단서</td> <td>-</td> <td>-</td> <td>3,000</td> <td></td> </tr> <tr> <td>일반진단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예방접종</td> <td>예방접종기록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 rowspan="3">신체검사</td> <td>핵심신체검사서(운동원 및 일반)</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중요종소기허가신청서(신체검사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건설기계신체검사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 rowspan="4">특별진단서</td> <td>병사출진단서</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상해진단서 300이하</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상해진단서 300이상</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사해진단서</td> <td>-</td> <td>-</td> <td>5,000</td> <td></td> </tr> <tr> <td rowspan="2">사실확인적 증명</td> <td>사실확인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출산·사상·사해증명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 rowspan="2">유료검증</td> <td>기발금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가, 인출무연가 나, B형간염</td> <td>1회분 1회분</td> <td colspan="2">유료검증 수수료는 약종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가면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0원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는 100원으로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p>※ 1. 개소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제원인서 발급료는, 발급 시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발급료는, 면허사범의 기준을 준용한다. 4. 개소명발급 진료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상 진료수입 기준에 준하여,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5. 타법발 및 구하여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p>		구분	명칭	기준	수수료		비고	진료 추가	수입 추가	일반진단	일반건강진단서	1종	-	1,000		근로자건강진단서	-	-	1,000		취중분야용사자간건강진단서	-	-	3,000		일반진단서	-	-	1,000		예방접종	예방접종기록서	-	-	1,000		신체검사	핵심신체검사서(운동원 및 일반)	-	-	1,000		중요종소기허가신청서(신체검사서)	-	-	1,000		건설기계신체검사서	-	-	1,000		특별진단서	병사출진단서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하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상	-	-	2,000		사해진단서	-	-	5,000		사실확인적 증명	사실확인서	-	-	1,000		출산·사상·사해증명서	-	-	1,000		유료검증	기발금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	-	-	1,000		가, 인출무연가 나, B형간염	1회분 1회분	유료검증 수수료는 약종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가면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0원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는 100원으로 한다.			<p>[별표 1]</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명칭</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수수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진료 추가</th> <th>수입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일반진단</td> <td>일반건강진단서</td> <td>1종</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근로자건강진단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취중분야용사자간건강진단서</td> <td>-</td> <td>-</td> <td>3,000</td> <td></td> </tr> <tr> <td>일반진단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문진면허의뢰신청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 rowspan="2">신체검사</td> <td>핵심신체검사서(운동원 및 일반)</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중요종소기허가신청서(신체검사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 rowspan="4">특별진단서</td> <td>병사출진단서</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상해진단서 300이하</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상해진단서 300이상</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사해진단서</td> <td>-</td> <td>-</td> <td>5,000</td> <td></td> </tr> <tr> <td rowspan="2">사실확인적 증명</td> <td>사실확인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출산·사상·사해증명서</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 rowspan="2">유료검증</td> <td>기발금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가, 인출무연가 나, B형간염</td> <td>1회분</td> <td colspan="2">유료검증 수수료는 약종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하의 경우 500 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p>※ 1. 개소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제원인서 발급료는, 발급 시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발급료는, 면허사범의 기준을 준용한다. 4. 개소명발급 진료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상 진료수입 기준에 준하여,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5. 타법발 및 구하여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p>		구분	명칭	기준	수수료		비고	진료 추가	수입 추가	일반진단	일반건강진단서	1종	-	1,000		근로자건강진단서	-	-	1,000		취중분야용사자간건강진단서	-	-	3,000		일반진단서	-	-	1,000		문진면허의뢰신청서	-	-	1,000		신체검사	핵심신체검사서(운동원 및 일반)	-	-	1,000		중요종소기허가신청서(신체검사서)	-	-	1,000		특별진단서	병사출진단서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하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상	-	-	2,000		사해진단서	-	-	5,000		사실확인적 증명	사실확인서	-	-	1,000		출산·사상·사해증명서	-	-	1,000		유료검증	기발금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	-	-	1,000		가, 인출무연가 나, B형간염	1회분	유료검증 수수료는 약종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하의 경우 500 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구분	명칭				기준	수수료		비고																																																																																																																																																																																	
		진료 추가	수입 추가																																																																																																																																																																																						
일반진단	일반건강진단서	1종	-	1,000																																																																																																																																																																																					
	근로자건강진단서	-	-	1,000																																																																																																																																																																																					
	취중분야용사자간건강진단서	-	-	3,000																																																																																																																																																																																					
	일반진단서	-	-	1,000																																																																																																																																																																																					
예방접종	예방접종기록서	-	-	1,000																																																																																																																																																																																					
신체검사	핵심신체검사서(운동원 및 일반)	-	-	1,000																																																																																																																																																																																					
	중요종소기허가신청서(신체검사서)	-	-	1,000																																																																																																																																																																																					
	건설기계신체검사서	-	-	1,000																																																																																																																																																																																					
특별진단서	병사출진단서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하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상	-	-	2,000																																																																																																																																																																																					
	사해진단서	-	-	5,000																																																																																																																																																																																					
사실확인적 증명	사실확인서	-	-	1,000																																																																																																																																																																																					
	출산·사상·사해증명서	-	-	1,000																																																																																																																																																																																					
유료검증	기발금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	-	-	1,000																																																																																																																																																																																					
	가, 인출무연가 나, B형간염	1회분 1회분	유료검증 수수료는 약종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가면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0원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는 100원으로 한다.																																																																																																																																																																																						
구분	명칭	기준	수수료		비고																																																																																																																																																																																				
			진료 추가	수입 추가																																																																																																																																																																																					
일반진단	일반건강진단서	1종	-	1,000																																																																																																																																																																																					
	근로자건강진단서	-	-	1,000																																																																																																																																																																																					
	취중분야용사자간건강진단서	-	-	3,000																																																																																																																																																																																					
	일반진단서	-	-	1,000																																																																																																																																																																																					
	문진면허의뢰신청서	-	-	1,000																																																																																																																																																																																					
신체검사	핵심신체검사서(운동원 및 일반)	-	-	1,000																																																																																																																																																																																					
	중요종소기허가신청서(신체검사서)	-	-	1,000																																																																																																																																																																																					
특별진단서	병사출진단서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하	-	-	2,000																																																																																																																																																																																					
	상해진단서 300이상	-	-	2,000																																																																																																																																																																																					
	사해진단서	-	-	5,000																																																																																																																																																																																					
사실확인적 증명	사실확인서	-	-	1,000																																																																																																																																																																																					
	출산·사상·사해증명서	-	-	1,000																																																																																																																																																																																					
유료검증	기발금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	-	-	1,000																																																																																																																																																																																					
	가, 인출무연가 나, B형간염	1회분	유료검증 수수료는 약종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하의 경우 500 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p>[별표 2]</p> <table border="1"> <thead> <tr> <th>예방접종명</th> <th>감면 대상자</th> <th>감면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상포진</td>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td> <td>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td> <td></td> </tr> <tr>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td> <td>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td> <td></td> </tr> <tr> <td rowspan="2">인플루엔자</td>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td> <td>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td> <td></td> </tr> <tr>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예방접종명	감면 대상자	감면 내용	비고	대상포진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		인플루엔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			<p>[별표 2]</p> <table border="1"> <thead> <tr> <th>예방접종명</th> <th>감면 대상자</th> <th>감면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상포진</td>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td> <td>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td> <td></td> </tr> <tr>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td> <td>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td> <td></td> </tr> <tr> <td rowspan="2">인플루엔자</td>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td> <td>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td> <td></td> </tr> <tr> <td>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예방접종명	감면 대상자	감면 내용	비고	대상포진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		인플루엔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																																																																																																																																																				
예방접종명	감면 대상자	감면 내용	비고																																																																																																																																																																																						
대상포진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																																																																																																																																																																																							
인플루엔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																																																																																																																																																																																								
예방접종명	감면 대상자	감면 내용	비고																																																																																																																																																																																						
대상포진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																																																																																																																																																																																							
인플루엔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	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																																																																																																																																																																																								

### 1. 개정이유

- 질병관리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기준 연령이 60세 이상 성인에서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유료접종 항목을 포괄적인 예방접종으로 하고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자체 예방접종 항목 추가 및 수수료 절상 기준 변경  
(제8조 관련 별표 1)

구 분	민 원 명	기준	수 수 료			비 고
			진료 수가	수입 증지	계	
예방접종	유료접종	1회분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실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내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 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 지원대상의 범위 수정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2)  
: 대상포진 예방접종 50% 감면 대상자 연령 확대  
(현행 60세 이상 군민 → 개정 50세 이상 군민)

장수군 조례 제2742호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장 수 군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

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군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대표자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과 서명 연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입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군청 및 읍·면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

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11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 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오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공동대표자용 [ ]청구 · [ ]철회 ·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위원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의회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의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장수군의회 의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span></p>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입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입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수군의회위원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의회의장 귀하

####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의회회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입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24. 2. 17. 시행)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장수군 공고 제2024-161호

##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장 수 군



### 1.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방안 운영계획 수립 (제3조)
- 나. 전담인력의 배치(제6조)
- 다. 재정지원 사항(제7조)

라. 지원대상 (제8조)

마. 지도점검 및 표창 (제9조 ~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361(063-350-5714)

3) 전자우편(이메일) : swb122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2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
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7.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등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고시 제2024 - 8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일

장 수 군



1. 사업의 목적 : 농지확대 개발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산서면 사상리 산13번지, 봉서리 산60-1번지 일원
  - 면 적 : 12,241㎡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132,682,000원
4. 사업 예정 기간 : 2024. 2월 ~ 2024. 12월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이 준 희

장수군 고시 제2024 - 9호

송천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안전재난과-29647(2017.10.19.) 호로 지정·고시된 송천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장 수 군 수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개요			지정 사유	비고
		면적(㎡)	유형	등급		
송천2지구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2695 일원	30,222	붕괴 위험	다	사면 붕괴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 각 1부

장수군 고시 제 2024 - 12호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고시취소(울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울치천(춘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 협의 절차 처리계획에 따라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고시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장 수 군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종 류	위 치			연 장 (km)	폭원(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소	최대			
신설	-	울치천	지방 하천	천천면 춘송리 1416-63	천천면 춘송리 842-2	금강 (지방) 합류	2.40	6	31	67,835	-	

1. 고시취소번호 : 장수군 고시 제2024 - 4호
2. 사 업 명 : 울치천(춘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 공 고 기 간 : 2024. 2. 22. ~ 3. 7.(15일간)
4. 취소공고사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미 이행으로 취소 고시

장수군 고시 제 2024 - 13호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고시 취소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유정천(유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 협의 절차 처리계획에 따라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공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장 수 군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km)	폭원(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소	최대			
신설	-	유정천	지방 하천	번암면 유정리 152	번암면 유정리 587-1	요천 (지방) 합류	4.23	10	59	82,797	-	

1. 고시공고번호 : 장수군 고시 제2024 - 3호
2. 사 업 명 : 유정천(유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 공 고 기 간 : 2024. 2. 22. ~ 3. 7.(15일간)
4. 취소공고사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미 이행으로 취소 고시

장수군 고시 제2024 - 14호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장 수 군 수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	잔여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23,873	23,873	18,463	5,410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장수	천천	남양	산72-1입	23,873	23,873	18,463	5,410	서*진	경상북도 경주시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 3. 지정해제 연월일: 2024. 2. 22.

##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수군 산림공원과(☎063-350-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도면 1부. 끝.

장수군 공고 제2024-180호

### 장수군 공인 등록(신조 및 폐기) 공고

장수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등록(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장 수 군



- 1. 신조 및 폐기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및 노후화된 수동인증기 교체
- 2. 공인사용 개시일자 : 2024. 2. 29.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신조	산서면장인(민원실전용) [수동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신조	산서면장인(민원실전용) [통합증명발급기]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신조	변암면장인(민원실전용) [수동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신조	변암면장인(민원실전용) [통합증명발급기]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신조	계남면장인(민원실전용) [통합증명발급기]	한글전서체 2.0cm정방형	
신조	계북면장인(민원실전용) [수동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폐기	산서면장인(민원실전용) [수동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폐기	번암면장인(민원실전용) [수동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폐기	계북면장인(민원실전용) [수동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끝.

장수군 공고 제 2024 - 211호

##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장 수 군



###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련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목적에 근거 법률 명시 (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다. 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
- 라. 자율방범활동 규정(안 제4조)
- 마. 경비지원, 지원 절차, 지도 및 감독, 정산,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9조)
- 바.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사. 서식 신설

- 별지 제1호서식(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지원금 정산서)
- 별지 제3호서식(지출결의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4. 따로붙임**

- 가. 개정조례안
- 나. 관계법령

**5.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 1) 전화 : 063-350-2140
- 2) 팩스번호 : 063-350-5745
- 3) 전자우편(이메일) : alsdud83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장수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해맞이 행사, 한마음 대회 등의 행사운영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 (상/하반기) 지원금 신청서** ]

(○○자율방범대·연합대)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0○○. (상/하반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장수균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 .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 명 :</li> <li>○ 일 자 : 20 . 00. 00.(0요일)</li> <li>○ 금 액 :            원</li> <li>○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li> </ul> <p style="margin-top: 20px;">※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p>				

장수군수 귀하

##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장은 방법대(또는 연합대·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또는 연합대·연합회)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00일 이내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00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또는 연합대·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또는 연합대·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장은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또는 연합대·연합회)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